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제정·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또는 예비문화유산 선정 등을 위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현상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6. 25. ~ 8. 5.)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서)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물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일부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시·도에서 실시한 관계전문가 조사 결과 의견서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계자료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지형도면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제3조(등록 사항 등) ①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

을 비치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등록증) ① 법 제9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등록 연월일
3.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4.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필수보존요소가 지정된 경우 그 내용

②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① 국가유산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3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결정 시 영 제2조에 따른 등록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3.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5.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6.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입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7.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탁본 또는 영인(影印)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제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10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배치도, 입면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 ②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④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현상변경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현상변경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하려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계획서(기간, 장소 및 보존환경을 포함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계획서(기간, 장소 및 보존환경을 포함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유산의 반출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 해당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기간, 장소 및 보존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법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보조금)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적·행정적 지원 및 지도)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국가등록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및 지도”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을 해당 국가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

리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서 고시한 공개 제한 사유가 소멸하여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고시 내용을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등록문화유산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출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관람료의 감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법 제3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건축허가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조사 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도지사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 의견 및 시·도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제24조(시·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에 관한 보고가. 명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재료, 구조 형식, 크기, 형태, 작자, 유래 및 그 밖에 현상에 관한 사항
마.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바.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에 관한 보고

가.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말소의 사유 및 연월일

3.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및 수량

나.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

유산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신청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및 문헌자료 사본
3. 신청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도면(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신청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우수건축자산 등록증(시설물·건축물 및 가로·경관에 한정한다)

② 예비문화유산 선정 신청 절차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① 법 제44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②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2. 예비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예비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37

호서식

2.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④ 제1항에 따른 선정증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법 제54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지표 및 통계 등 산출 업무
2.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에 관한 정보교류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 도	수 량	
	소재지(보관장소)				
	구조 및 규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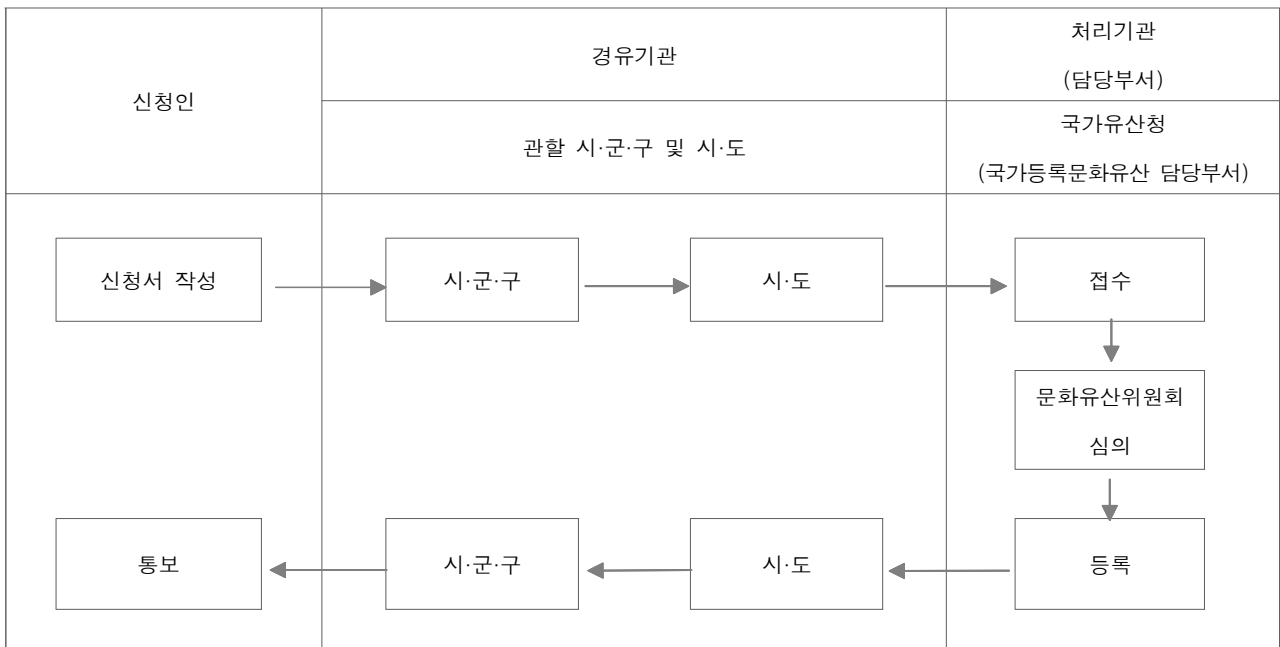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시·도에서 실시한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지형도면 4. 건축물대장 5. 토지(임야) 대장 6.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등록 대상물명			사용용도	원)현)
소재지			용도지역	
소유자			국유[], 공유[], 사유[]	
문화유산적특징				
보존관리현황	보존상태			
	관리인력			
	보수관리실적	(시기, 사업비, 내용 등)		
	기타			
활용계획	목적·필요성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재원 부담주체:)		
지자체검토의견	계획적정성			
	유사사례			
	종합의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5쪽 중 1쪽)

관 리 번 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등 록 일		말 소 일
구 조	형식/형태	
(제) 작 자	규격/크기	
수 량 / 면 적	연대/시대	
소 재 지 / 보 관 장 소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관 리 단 체	주 소	
	단체명	전 화 번 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등 록 사 유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현 황		

문화유산명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문화유산명 □□□□□

이동 현황[illegible]

문화유산명 □□□□□

도면 / 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제 호

국 가 등 록 문 화 유 산 등 록 증

명 칭

수 량(등록면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경 연월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 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4-001호)

210mm×297mm [백상지(150g/㎡)]

문화유산명 □□□□□

필수보존요소

명 칭

내 용

(도면 또는 사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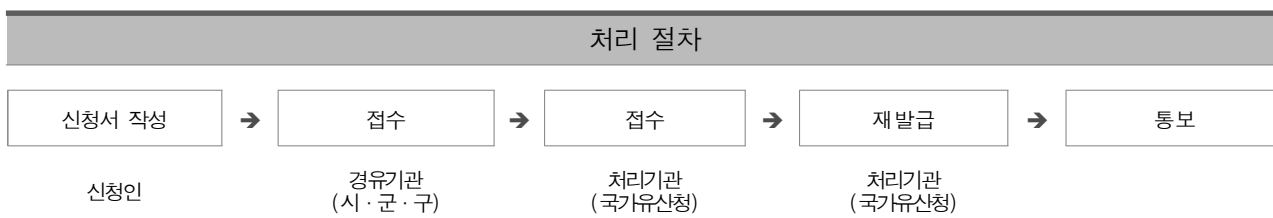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사유	[]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소유자):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80g/m²)]

제 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등록문화유산 등 록 명 칭 :

등 록 수 량 :

등 록 일 :

지정받는 자 단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위 단체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illegible]

작성요령

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등록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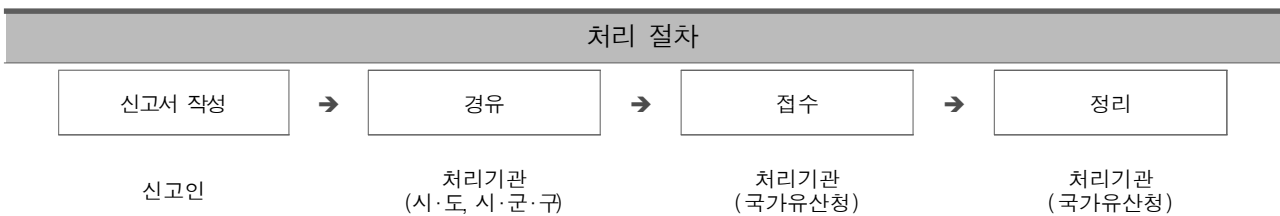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관리자	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유				(선임·해임)연월일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선임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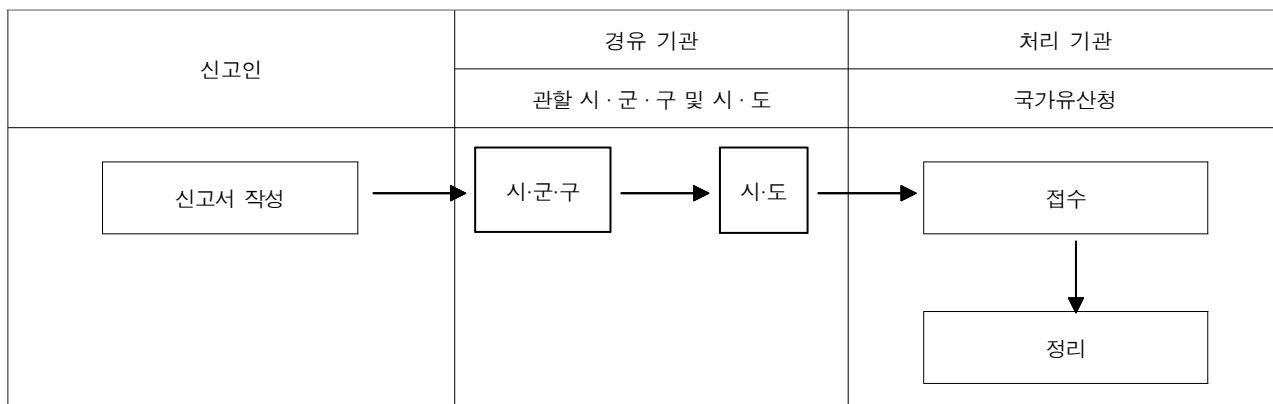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 등록문화유산 수리에 대해 지원을 받았던 사실(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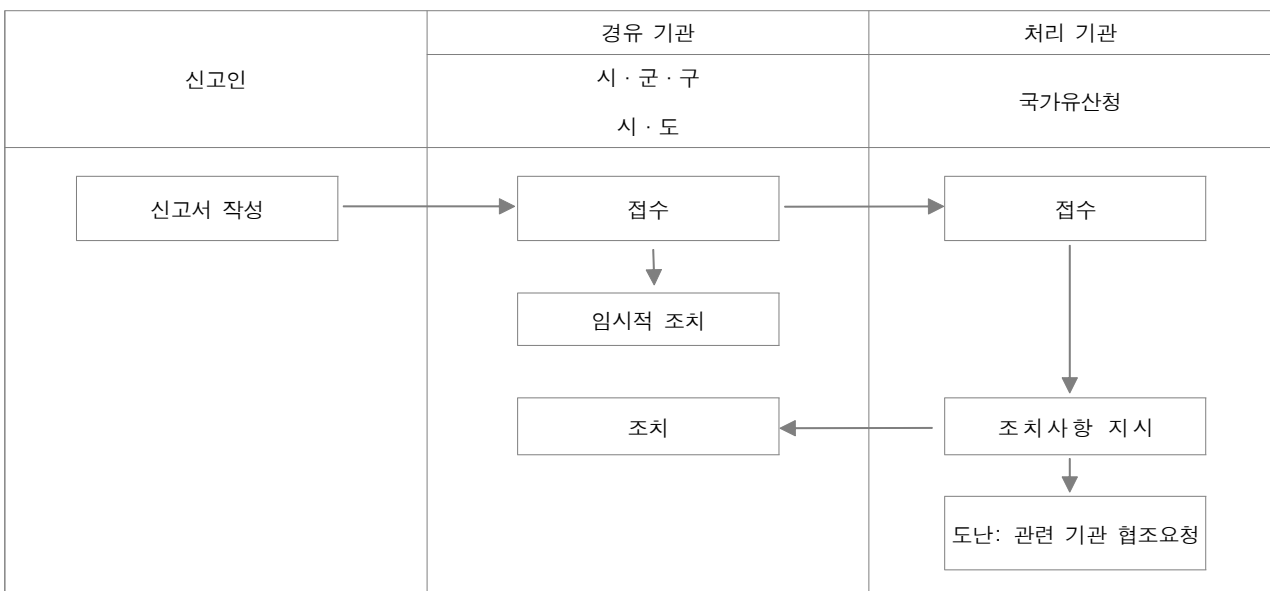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착수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시·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공사내용	명칭		
	내용		
착공 연월일	. . .	준공(예정) 연월일 . . .	
허가, 명령 연월일	. . .	허가, 명령의 내용	
공사 담당자	업체명	공사금액 원	
	감독자명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의 []착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수료 없음
------	---	-----------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칭	수량	
반출허가 내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출·반입 연월일	반출	반입	
반출·반입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관 장소	반출 전		
	반입 후		
문화유산 현황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내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 기관	처리 기관
	관세청	국가유산청
신고서 작성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접수
	(제출)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입 신고 목록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국가등록문화유산 탁본·영인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 상 문 화 유 산	명칭	
	종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신청사유		
신청구분		수량
작업 예정기간	: : 부터 (일간) : : 까지	작업 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	성명	주소
기술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소요경비		재원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탁본·영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 행위 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시·도 경유 2일)
신고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재지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부분			
현상변경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			
소유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관리단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공사시행자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착공		
	준공		
소요경비		재원	
그 밖의 참고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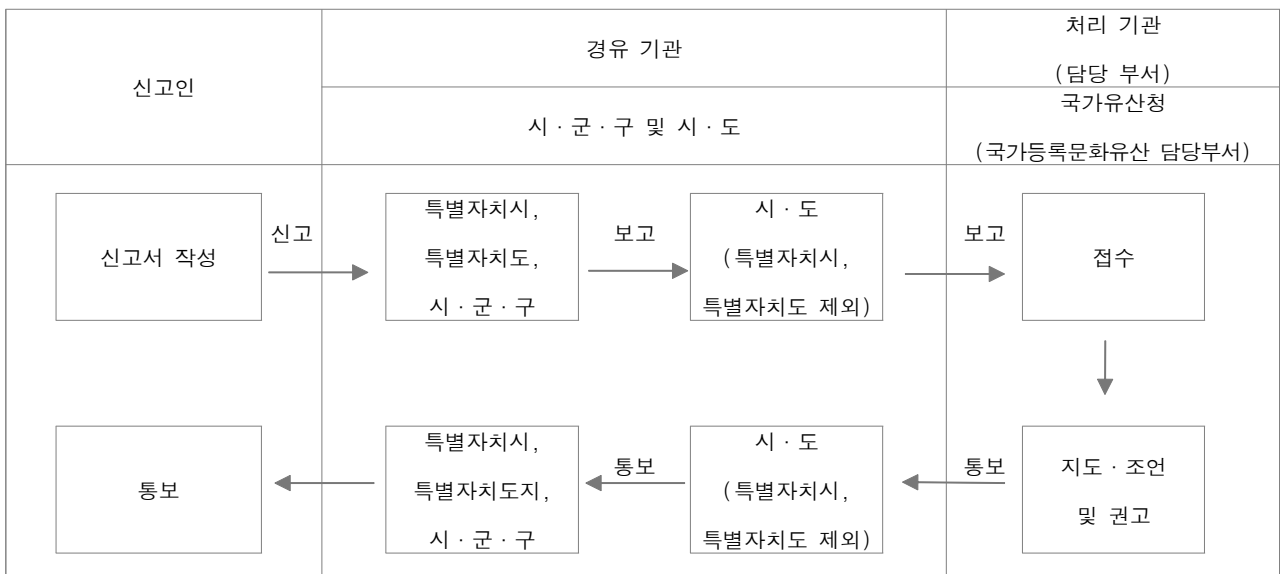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또는 보존처리계획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건축물 외관(지붕부 포함)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신청사항	위치
	내용
	사유
참고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요경비	원	재원	
	완료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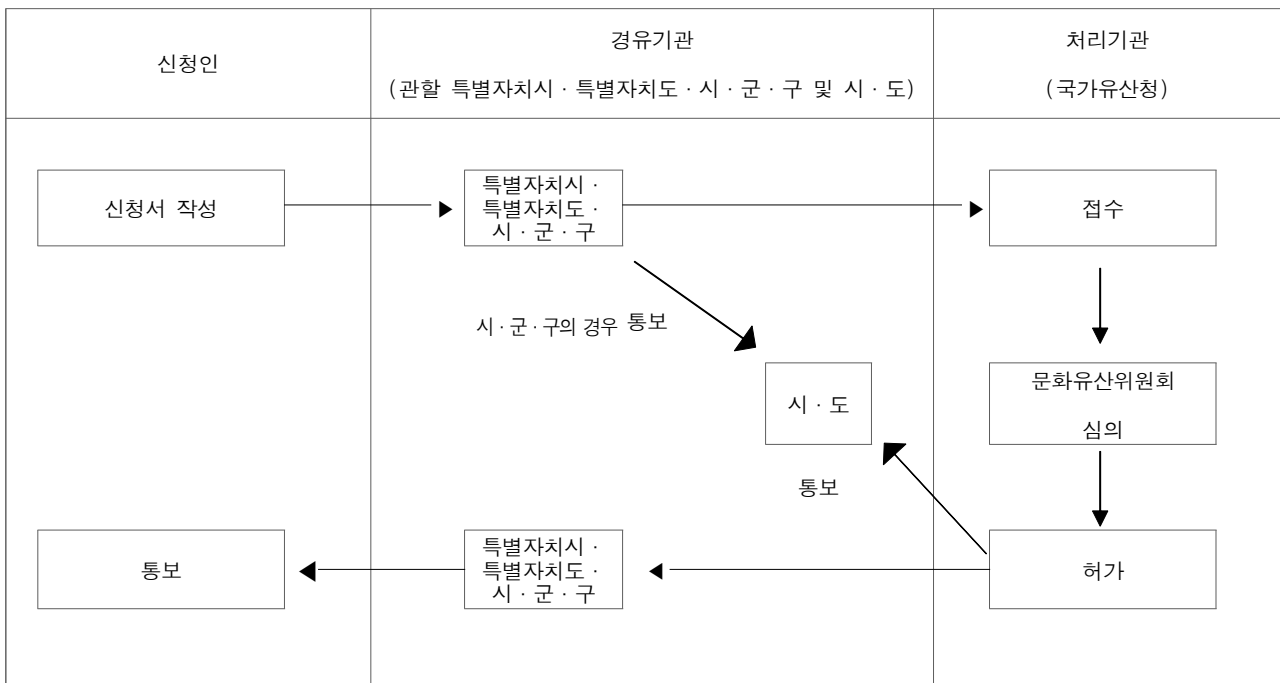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배치도, 입면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폰:)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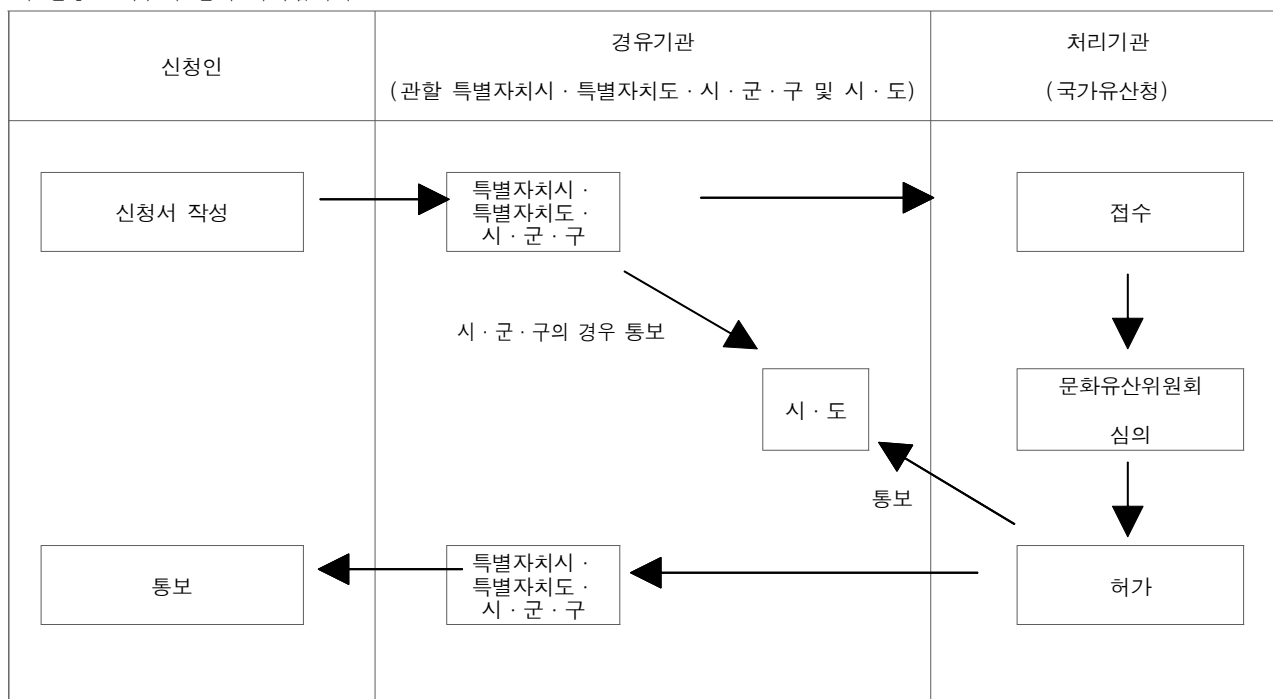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배치도, 입면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허가 사항	개요		
	위치		
	내용		
	기간		
허가 조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정사항

1. 이 허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허가내용	개요
	위치
	당초 허가내용
	변경 허가내용
허가기간	당초 기간
	변경 기간
허가조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정사항

1. 이 허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의 허가대장

구분	허가번호	허가받는 자		대상 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착공일자	비고
	허가일자	성명	주소	관리번호	명칭	사업명	위치	내용	기간연장	완료일자	

작성방법

-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 ※ 기간연장란은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연장된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앞쪽)

제 호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국 가 유 산 청

60mm×90mm[백상지(120g/㎡)]

(뒤쪽)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 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 십시오.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칭	수량
	규격	보관장소
반출목적		
반출대상국가	보험 방법	
반출예정연월일	반입예정 연월일	
반출 담당자	성명	
	주소	
반출 중 보호방법		
반출에 관한 협약내용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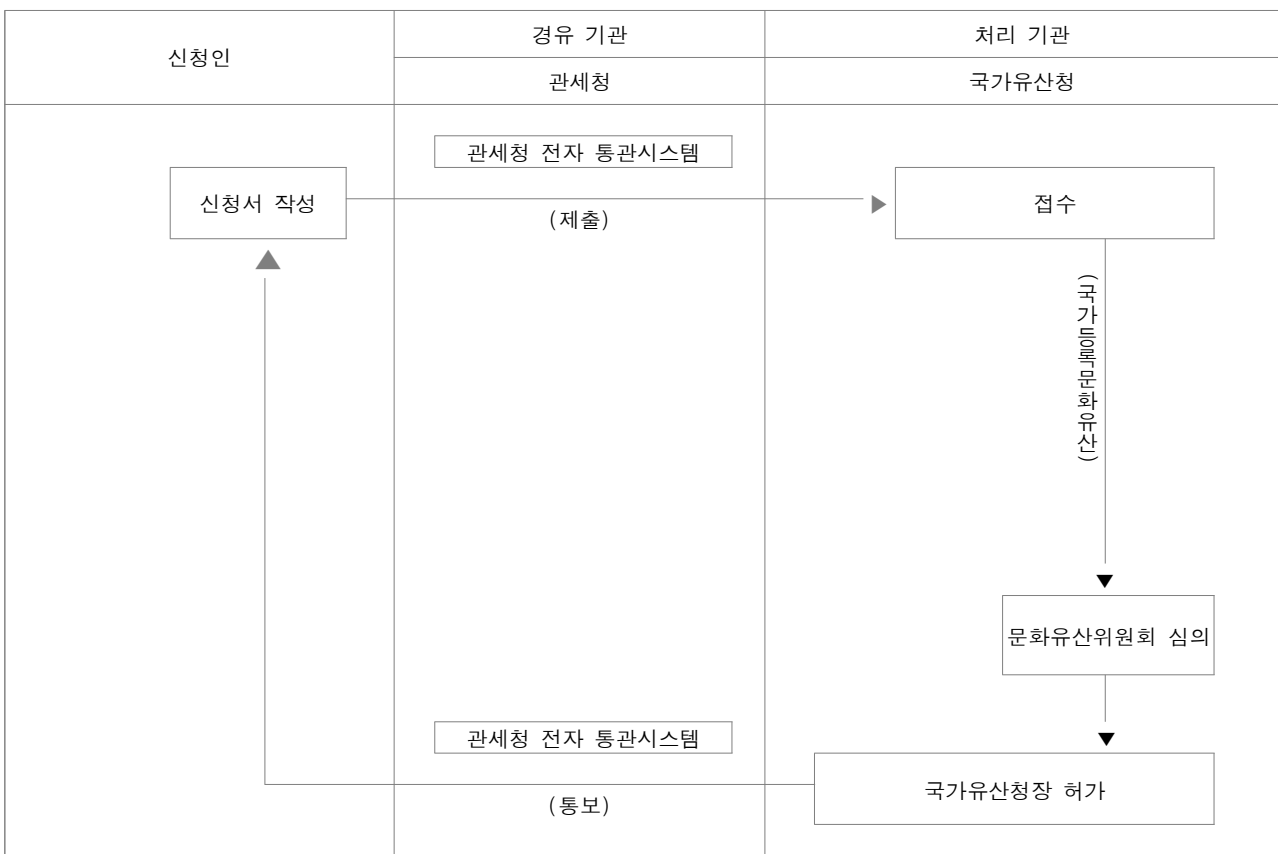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계획서(기간, 장소 및 보존환경을 포함합니다)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	
	반출사유	
허가조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정사항

-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호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신고기간 경과 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국외 반출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칭	수량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당초의 반출·입 예정 연월일			
연장허가 신청 반출·입 연월일			
연장 사유			
기간 연장에 관한 협약 내용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반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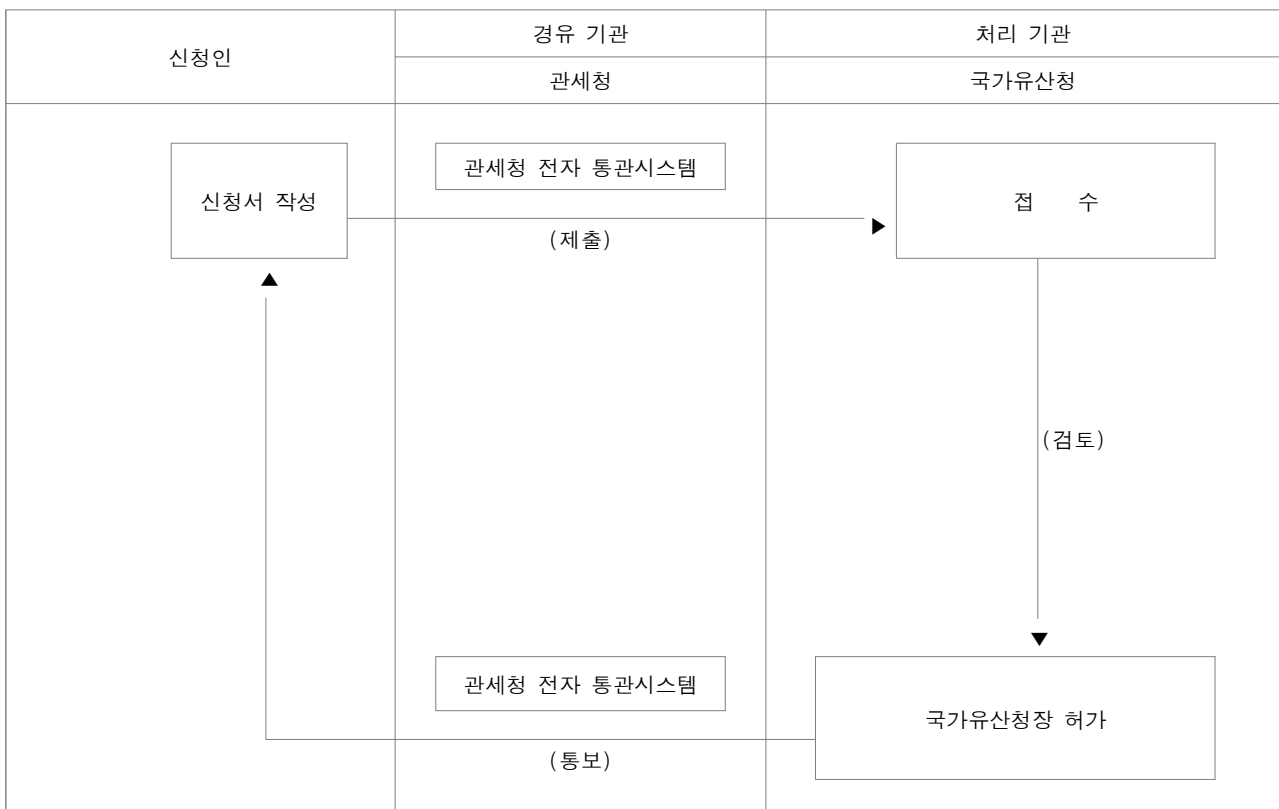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계획서(기간, 장소 및 보존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 목록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당초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당초 반출기간	변경 반출기간	
	반출사유		
허가조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정사항

1.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4.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호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신고기간 경과 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

명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사업명:

1. 문화유산 현황

가. 등록별: ○○(. . 등록)

나. 명칭:

다. 수량:

라. 소유자(보유자):

마. 관리자:

바. 관리단체명:

사. 소재지(보관 장소): (동·리·번지까지 기재)

아. 주요 연혁 및 특징:

자. 등록면적: m²(국·공유지: m², 사유지: m²)

※ 간략하면서도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연도별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집행 상황 등)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업내용	사업비				신축내역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기타)		
계						

※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 자료

※ 보충설명 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위치도·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 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교부 내역

(단위: 천원)

시도별	소재지	문화유산명	사업 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 교부 조건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회계연도: 년도(집행, 이월 구분작성)

[illegible]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 지도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시·도 경유 20일)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재지		
소유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관리단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문화유산의 현재용도			
기술 지도 요청사유			
기술 지도 요청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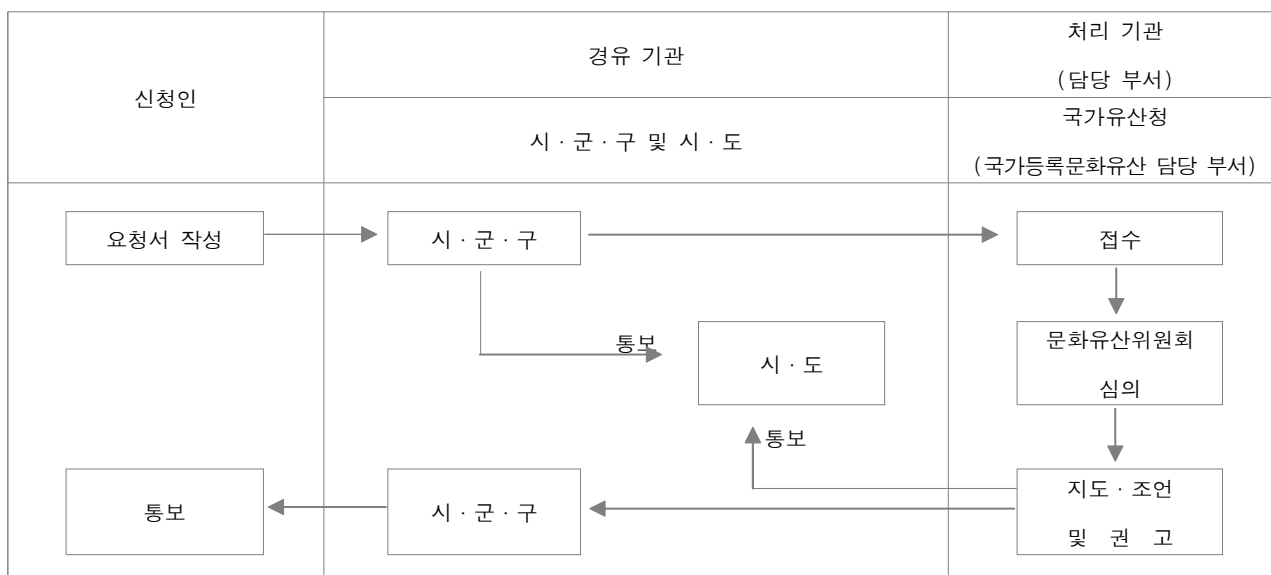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대상 문화유산	명칭			수량	
소재지	(전화번호:)				
공개제한 사항	제한 사유				
	제한 기간				
	제한 지역				
출입허가 신청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출입자	
	출입 지역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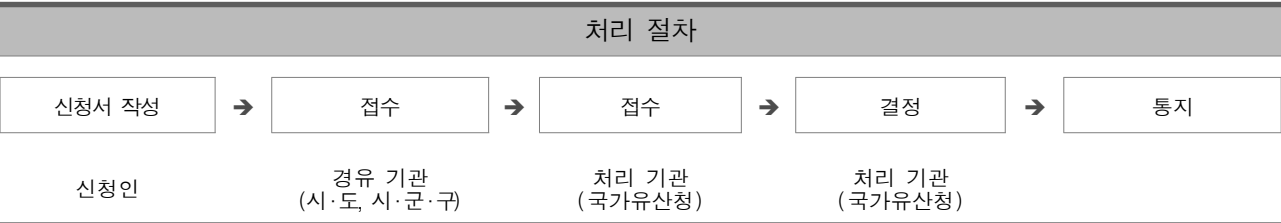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국가등록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유산	명 칭		수 량		
	소 재 지				
허가사항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출입 지역				
	출입 인원				
허가조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책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처리기간 180일	
신청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명			연락처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명칭						
	위치						
	지정면적						
	지정요성						
	지정기대효과						
	주요사업내용						
지구 내 주요 국가유산	명칭	유형	지정·등록 여부	소재지	면적	소유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지방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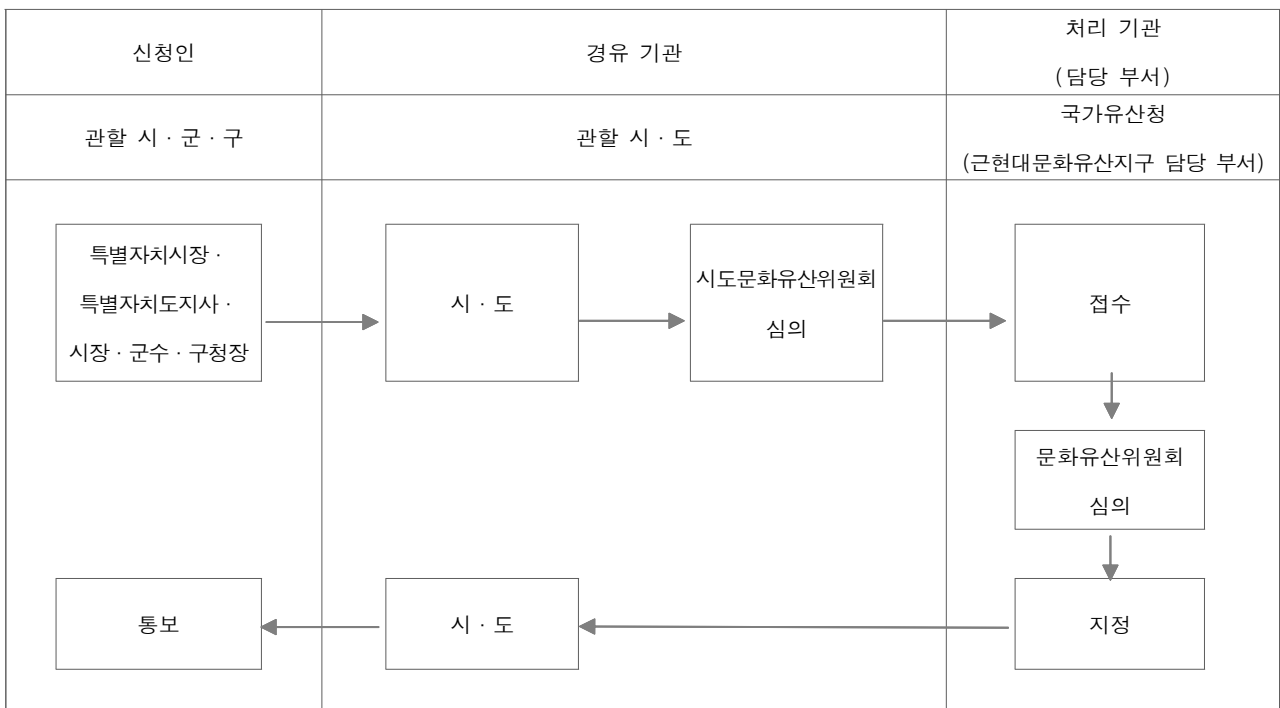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조사 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서류 4. 시·도지사 검토의견서(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5. 관계전문가의 조사 의견 및 시·도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5쪽 중 1쪽)

관 리 번 호		
명 칭	한글	한자
	영문	
지 정 일		
위 치		
면 적		
지 정 근 거		
등록문화유산 현 황		

210mm×297mm [백상지(80g/㎡)]

문화유산명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정비 상황(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문화유산명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등록문화유산 현황

[illegible]

문화유산명 □□□□□

특례적용 현황(건폐율·용적률 완화, 국고보조금)

[illegible]

문화유산명 □□□□□

지적(地籍)·지형도 / 도면 / 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동의)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용도		수량	우수건축자산 여부 () * 시설물 · 건축물 및 가로 · 경관에 한함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제작자 및 제작연도				
	구조 및 규모				
	연혁 및 소장 경위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선정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신청(동의)합니다.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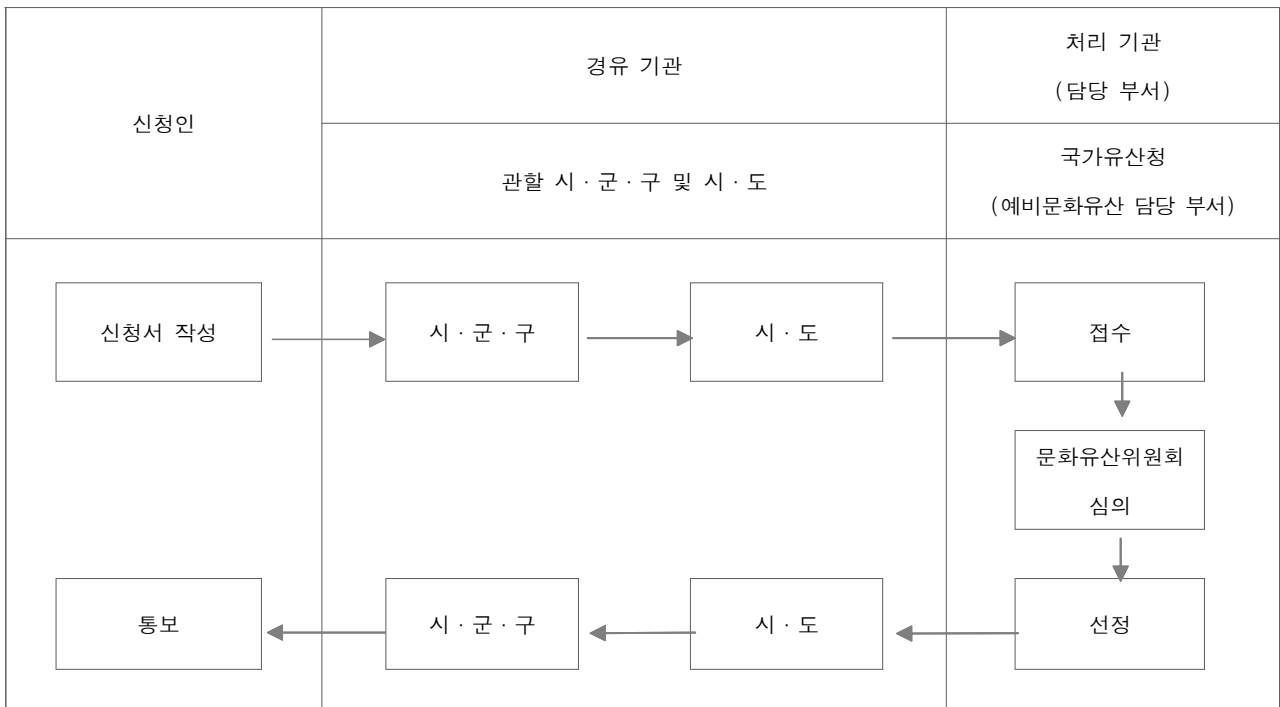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및 문헌 자료 사본 3.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도면(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우수건축자산 등록증(시설물·건축물 및 가로·경관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시·도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가의 조사의견서 및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 자료 3.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지형도면 4. 건축물대장 5. 토지(임야) 대장 6.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3~7은 부동산에 관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예비문화유산 선정증

명 칭

수 량(제작연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위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경 연월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 선정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예비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예비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그 선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 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4-001호)

210mm×297mm [백상지(150g/㎡)]

예비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대상 예비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 예비문화유산 보존처리 또는 수리 지원을 받았던 사실(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경유

처리 기관
(시·도 시·군·구)

→

접수

처리 기관
(국가유산청)

→

정리

처리 기관
(국가유산청)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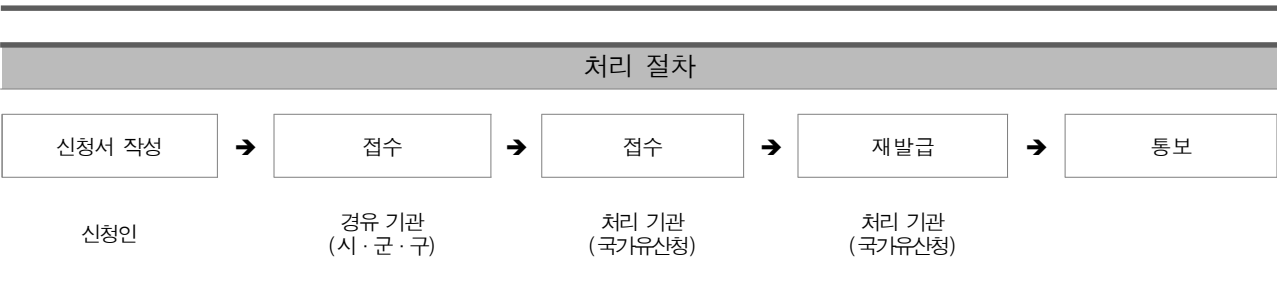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대상 예비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재발급 사유	[]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쪽)

제 호
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국 가 유 산 청

60mm×90mm[백상지(120g/㎡)]

(뒤쪽)

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예비문화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 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 십시오.